탄 원 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 제1심 선고 전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431
피고인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탄원인	_____
탄원 취지	개별 책임의 신중한 판단 및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양형 요청

1. 재판부에 올리는 탄원의 말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윤재순 피고인이 공동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행위까지 한꺼번에 평가받지 않고, 자신의 실제 발언과 판단, 관여 단계, 그로 인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판단받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총무비서관이라는 지위가 면책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지위만으로 개별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저 이전 공사비와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혹은 국민의 세금, 공무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재정 통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를 가볍게 보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관여한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 윤재순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세밀하고 공정하게 가려 주시기를 청합니다.[2]

2. 공소사실상 불리한 자료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인용한 2026년 6월 12일 보도에는 윤재순이 청사관리본부 측에 대통령비서실과 협상하려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예산 전용 방침과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발언의 존재와 의미,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에 관하여 엄정한 증거 평가가 필요한 자료입니다.[3]

2026년 8월 21일 보도에는 당시 윤재순이 행정안전부 쪽에 기획재정부 관련 절차를 정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나옵니다. 이를 단순히 업무상 연락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메시지 자체로 부당한 압박이나 범죄의 고의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과 송수신 시각, 실제 결재 경과, 상대 공무원의 진술을 함께 보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6]

3. 예산 전용 방침의 결정과 윤재순의 가담 시점을 구분해 주십시오

윤재순 측은 예산 확보 방안이 정해진 이후 회의와 연락에 참여했을 뿐 위법한 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습니다. 반면 공소장 보도는 피고인이 청사관리본부 예산을 활용하는 방침을 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서술합니다.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 어느 내용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3][5]

예산 부족이 확인된 시기, 대체 재원 확보안이 논의된 시기, 담당 부처의 반대가 전달된 시기, 기획재정부 승인에 관한 연락 및 최종 결재 시점, 그리고 윤재순이 실제 행동한 시기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 주십시오. 설령 초기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집행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전체 계획을 주도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발언의 위법성과 실제 강제된 행위를 별도로 심사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대통령실의 높은 직급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상대방은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된 발언을 사소한 협의 문구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123조는 지위의 영향력이나 무례한 언행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직권을 남용한 구체적 행위와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7][9]

보도된 발언의 원문·전체 맥락과 수신자, 윤재순의 당시 직무권한, 상대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 및 거부·검토 가능성, 실제 집행 내용,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구별하여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높은 직책에서 한 말이 부당했다는 판단과 형사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 사이에 필요한 증명의 단계를 생략하지 말아 주십시오.[11][12]

5. 기획재정부 승인과 관련 인물의 처분은 좁게 해석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관련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신 인사를 기소유예로 처분하고 당시 장관은 불입건으로 종결하면서 적극적인 가담 여부와 직무상 승인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윤재순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관계 공무원의 승인 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승인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는 독립적으로 살펴야 합니다.[6]

2022년 국가재정법 제45·46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전용 요건 및 금지 사유를 전제로, 행정안전부의 예산 변경 요청과 기획재정부의 승인권 행사, 윤재순이 한 연락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 기관이 독립적·자율적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8]

6. 공동 피고인별 혐의 및 인사상 불이익 주장과 구분해 주십시오

공개된 기소 보도에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혐의를 윤재순에게 직접 적용된 독립 공소사실인 것처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공모의 내용과 기능적 역할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2]

관저 예산 전용에 반대한 실무자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익의 사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인사 조치의 직접 지시자와 결정 경로, 윤재순이 이를 인식하거나 공동 실행하였는지는 별개로 증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3]

7. 개인별 정상과 비례적인 양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 단계별로 한 행동, 발언의 강도, 부처의 실제 처리에 미친 영향, 공모의 범위 및 결과를 신중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 확보 방침을 처음 설계·결정한 사람과 최종 승인 또는 집행을 보조한 사람, 독자적으로 압박을 행사한 사람의 책임은 실제 증거가 뒷받침하는 만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10]

검찰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은 법원의 선고형이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이 증명된다면 그에 합당한 판단을 구하며, 확인되지 않은 반성·건강·가족 사정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인정되는 유리한 정상과 관여 정도의 차이가 형의 균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청합니다.[1]

8. 결어

존경하는 재판부께. 이 탄원은 강한 발언이나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자는 호소가 아닙니다. 오직 윤재순 개인의 어떤 직권이 어떻게 행사되었고,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다른 사람의 행위와 구별해 판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부디 한 번의 발언, 단편적인 문자메시지, 공동 피고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범행을 한데 묶지 마시고, 관련 증거 전체를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공소사실에는 무죄의 원칙을 적용해 주십시오.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살피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별 사정에 따른 가능한 관대한 처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참고자료

[01] 연합뉴스 | 2026. 10. 16. 결심공판, 구형 및 선고 예정

[02] 연합뉴스 | 2026. 6. 9. 기소 사실과 피고인별 혐의 구분

[03] 연합뉴스 | 2026. 6. 12. 공소장 보도: 예산 부족, 관련 발언 및 압박 주장

[04] YTN | 2026. 7. 2. 공판준비기일: 직권·상대방·공모 및 관리 주체 쟁점

[05] 연합뉴스 | 2026. 7. 22. 첫 공판과 피고인별 무죄 주장

[06] 연합뉴스 | 2026. 8. 21. 기재부 관련 처분 및 윤재순 문자메시지

[07] 대법원 |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08]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재정법 연혁, 제45·46조 (2022년 당시 판본 확인)

[09]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